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53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정태호·김종민·한준호

정을호 • 황명선 • 강준현

손명수 · 이학영 · 김주영

이정문 • 전현희 • 강선우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 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 3.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의대여행위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 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 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 하다. 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 자 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 자 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 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 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 3.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 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 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 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 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